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현장실습 정의

① 개정 고시의 '현장실습생'의 범위는?

-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자

② 개정 고시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을 포함
 -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 단, 산재노출 우려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업무 종사가 없는 견학(observation)은 제외하며
 - * 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아울러, 보육·간호·사회복지실습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의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과목인 현장실습은 제외함

③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④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 (주의)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인정"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非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

-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에 해당

⑤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⑥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준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의미·범위

⑦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순수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⑧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4대보험 전체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도 발생하는지?

-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외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신고·납부 의무발생 시점

⑨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⑩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지?

- ❖ '18.9.11일부터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
- ❖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보험료 산정 방법

⑪ 개정 고시의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현장실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12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산정 방법은?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합산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13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방법은?

❖ 무급 현장실습도 예외없이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의 방법으로 산정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신고·납부 미이행시 적용·제재

14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시 보상을 받음

15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가 징수됨*

* 단, 징수액 한도는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 다만, 현장실습생 가입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다음연도 3.15일에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경우, 미가입·미납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음

보상범위 · 수준

16 보상범위 및 수준은?

-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산재발생시 사업주 배상범위

17 현장실습생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배상범위는?

-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됨(산재보험법 제80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 (원)	자격취득 일 (YYYY.M.M.DD)	국민연금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부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고용보험·산재보험 부과구분 (해당자만)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1			[]에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 건강보험 ([]취득 월 납부 회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중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예 []아니오	
2			[]에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 건강보험 ([]취득 월 납부 회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중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예 []아니오	
3			[]에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 건강보험 ([]취득 월 납부 회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중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예 []아니오	
4			[]에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회망)			[] 건강보험 ([]취득 월 납부 회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중 사업장으로 발송 회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예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면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들을 포함한다) 3. 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호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향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 향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충승소) 2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 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7	O	x	O	x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DI 접수시>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단위기관(영업소)		기호	명칭
가업자 정보입력 [독해권의 내용은 필수로 입력하실 바랍니다]							
신청구분		☐ 전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성명(외국인)		국적		채류자격		대표자여부 ☐ 예 ☒ 아니오	
국민연금 소득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취득일 납부여부 특수직종 직역연금부호 ☐ 없음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말함.							
건강보험 보수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보험료납부부호 피부양자 신청 ☐ 있을 ☒ 없을 피부양자명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예 ☒ 아니오 공무원/교직원 회계부호 직종부호							
고용보험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종료월 비고 보험료부과부호 부호 사유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종료월 비고 보험료부과부호 부호 52 산재 사유 03 현장실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대학교(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 적용 범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한정되어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고용노동부고시를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귀 대학교(대학) 실습생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현장실습에 대하여 '18. 9. 11.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이 널리 홍보되어 실습생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대학 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 사업장에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 (적용 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 실습생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현장실습(실습학기제 및 보육, 간호, 사회복지 등 자격취득 관련 현장실습도 포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으로서 시행일('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사람 포함)
- (가입 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
- (보험료)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대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일반 근로자의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과장

정용석

차장

김광배

적용계획부장

전결 10/02

김상철

협조자

시행 적용계획부-3923 (2018.10.02.)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전화 0527047213 전송

접수

/

/connoisseur@kcomwel.or.kr / 대국민 공개